



천주교 서울대교구

구로3동 성당

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

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
☎ 사무실 857-8541 팩스 857-8549

부속기관: 골별유치원 857-8545 / 요셉어린이집 857-8546

주 임 신 부	백 승 준	시 문
보좌 신 부	이 정 은	요한보스코 (중·고등부/청년부)
	장 승 필	안드레아 (유·초등부)
전 교 수 녀	윤 옥 주	율리아 (원장)
	송 도 다	도 다 (중·고등부/청년부)
	이 민 자	미란다 (유·초등부)
총 회 장	박 용 환	안토니오 010-3782-7563
연령회 회장	김 인 기	베드로 010-5311-7604

모임

단 체 명	일 시	장 소
제대한화회	7월 1일(화) 11:00	6교실
자녀를 위한 기도	7월 4일(금) 19:40	1교실
성모성심회	7월 5일(토) 17:30	교육관
위령봉사회	7월 6일(일) 11:40	보스코홀
M.E.	7월 6일(일) 11:50	6교실
구역장,반장모임	7월 9일(수) 20:00	식당

다음 주일(7/6) 청소 담당 : 15구역

- 7월과 8월은 국수잔치가 없습니다.

알림

- 오늘은 교황 주일로 2차헌금이 있습니다.
- 7월 1일(화) 10:00 첫 화요일 성시간 및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.
- 7월 7일(월) 10:30 살레시오 꿈(CUM) 후원미사
- 7월 11일(금) 병자영성체는 구역별로 있습니다

영명축일 축하미사 (매월 첫 수요일)

- 일시 : 7월 2일 오전 6:30, 오후 7:00
- 축일이 7월이신 신자분들 대상으로 미사 때 안수 및 작은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.

기부금 영수증 변경사항 안내

- 올해부터 납부하시는 교무금, 감사헌금 등은 사무실에서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불가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영수증만 발급가능합니다.
- 2022년 이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동의기간경과로 다시 제출바랍니다.
- 동의서 미제출시 홈택스확인불가합니다.
- 교무금은 납부후 명의변경이 어려우니 기부금 공제자 명의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나무 한 그루가 숨 쉬게 합니다.
생명과 환경을 돌보는 삶을 살아갑시다.
- 가정생명환경분과 -

예비자 교리반 모집

- 교리시작 : 6월 22일(일) 9시
- 장소 : 2교리실
- 세례일 : 성탄대축일

신자 신앙교육 7월 특강 안내

일 시	주 제	강 사
7/14(월)19:40	조용한 사람, 안드레아	주임 신부님
7/28(월)19:40	천동의 사람, 야고보와 요한	

본당 교실 냉방기 사용 안내

-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5℃입니다.
- 회합 종료 10분 전에 에어컨 리모컨으로 작동을 종료합니다.
- 퇴실시 5교실 복도 벽면 연두색버튼을 누릅니다.
※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우리들의 정성(6월 18일 ~ 6월 24일)

교 무 금		5,883,000원
주일헌금	현금	 5,034,400원
	하상업	 31,000원
2 차헌금		1,901,900원
이영숙 1만원 최정연 5만원 김도현10만원		
감사헌금 조윤기10만원 지기홍10만원 신영숙 7만원		
박홍민10만원		

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 일	해설	복사	독서		
6/29	박혜선	신종구	장희석	하재민	민옥경
7/6	이인옥	도현만	이남식	김덕영	손정주

성체 분배자 명단

월 일	토요주일	06:30	10:30		12:00
6/29	이운영	박승환	김영균	최영만	장인홍
7/6	이화봉	최웅조	김용진	박용환	조홍환

성가번호 ♪ 입당 : 291 ♪ 예물준비 : 340, 212 ♪ 영성체 : 174, 502 ♪ 파견 : 201

화답송 
주 님 은 온 갓 두 러 움 에 서 나 를 구 하 셧 네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제 2 장 성 사

제 1 절 세례성사

제 3 관 장애인의 세례

제 56 조 (신체 장애인)

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.

제 57 조 (정신 장애인)

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(교회법 제852조 2항 참조).

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는 다음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.

제 4 관 비가톨릭 신자의 세례

제 58 조 (성공회 신자의 세례)

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. 다만 세례 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본인인,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, 그가 받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여 그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었음을 증언하여야 한다(교회법 제869조 2항;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, 제220조 참조).

제 59 조 (기타 교파 신자의 세례)

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.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(교회법 제869조 2항;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, 제220조 참조).

1. 그 교파의 교리가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,
2. 그 교파의 교리는 세례성사를 인정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르게 집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.

제 60 조 (세례받지 않은 경우)

세례받지 아니하였거나 무효한 세례를 받았음이 확실한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교리를 거쳐서 새로이 세례받게 한다.

제 61 조 (세례가 의심되는 경우)

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,

1. 어른이면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를 밝힌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(교회법 제869조 1항 참조).
2. 어린이이면 그 부모에게 위에 언급한 설명을 한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(교회법 제869조 3항 참조).

제 62 조 (세례가 유효한 경우)

유효하게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“일치 예식”을 거행하여야 한다(어른 입교 예식서, 부록 “일치 예식” 참조).

<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참조>